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31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정성국·서천호·유용원

김용태 • 조정훈 • 진종오

박정하・곽규택・한지아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하여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의뢰한 사건이 있었음. 이를 통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수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능 출제 全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자 함(안 제3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①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 이후 3년 동안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1. 납세자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① 국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34조제1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
	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렁으
	<u>로 정한다.</u>
<신 설>	①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 이후 3년
	동안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하
	여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①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
	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된 영
	리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 설>

제64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청장에게 출제위원에 관한 과 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1. 납세자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① 국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2)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34조제1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제위원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자
- ③ (현행과 같음)